

[일련번호 : 3]

양 천 구 시 정 요 구

제 목 위험근무수당 수령 부적정(상시 종사 미충족)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■■■■■■ 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과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[별표 7]의 지급 구분 및 [별표 8]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, 2024.8.29.) V. 특수근무수당 1.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) 직무의 위험성, 2) 상시 종사 여부, 3)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“직무의 위험성”은 영 [별표 8]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, “상시 종사”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·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, “직접 종사”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㉮과 ▲▲팀장 ○○○ 외 1명은 ‘****기관 지도점검, ****시설 지도점검 등 업무’를 통상 월 1회 정도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4. 1월부터 2024. 10월, 10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총 440,000원을 수령하였으며,

㉮과 △△팀장 ○○○은 ‘*** ** 관리 업무 및 *** 관련 업무’를 담당자 부재시에만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4. 1월부터 2024. 10월, 10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총 500,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.

[표 1] 위험근무수당 지급 및 부적정 내역 : 별도 통보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㉮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㉮과장은

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940,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※ 감사 대상기간 이후 지급된 수당은 자체 반납처리